

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설치·시공기준

(동력자원부고시 제87-47호)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설치·시공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87. 8. 27

동력자원부장관

내용: 별첨

부칙:(시행일) 이 고시는 '87. 9. 1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설치·시공한 것 및 시공증인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설치·시공한 것으로 본다.

제정 '81.6.15 동력자원부고시 제81-196호

개정 '87.8.27 동력자원부고시 제87-47호

- (1) "주관선"이란 송수주관 및 환수주관을 말한다.
- (2) "송수주관"이란 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를 방열관 또는 온수탱크에 공급하는 관을 말한다.
- (3) "환수주관"이란 방열관등을 통하여 냉각된 온수를 회수하는 관을 말한다.
- (4) "팽창판"이란 보일러 본체 또는 환수주관과 팽창탱크를 연결시켜 주는 판을 말한다.
- (5) "팽창탱크"란 온수의 온도변화에 따른 체적 팽창 또는 이상팽창에 의한 압력을 흡수하며 보일러의 부족수를 보충할 수 있는 물을 보유하고 있는 탱크를 말한다.(참고도 참조)
- (6) "공기방출기"란 순환수증에 함유된 공기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.

2. 보일러의 설치장소 및 설치

2.1 보일러의 설치장소

보일러를 설치하는 곳은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
- (1) 통풍이 잘되고 배수가 양호할 것
- (2) 주관선을 가능한 한 짧게 할 수 있을 것
- (3) 연탄가스가 거실등 실내에 유입되지 않을 것
- (4) 눈·비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

2.2 보일러의 설치

보일러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총칙

1.1 적용범위

이 기준은 구멍탄용온수보일러(이하 "보일러"라 한다)의 설치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.

1.2 용어의 정의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(1) 수평을 유지할 것
 - (2) 주위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 청소가 용이할 것
 - (3) 배관과의 연결은 유니온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으로 할 것
 - (4) 매몰식 보일러의 경우 두께 40mm 이상의 단열재로 단열시공을 하고 방수처리를 할 것
 - (5) 급수를 위한 수도관 또는 급수관을 보일러 또는 배관에 직접 연결하지 말 것
- 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1) 크기는 호칭 15A 이상 일 것
 - (2) 밸브 또는 체크밸브등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을 것
 - (3) 가능한 한 굽힘이 없고 어느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
 - (4) 방출밸브는 KSB 6155(온수기기용 방출밸브)에 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

3. 배관 및 부속장치

3.1 배관일반

보일러의 배관은 순환수의 온도차에 의한 자체 순환력으로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온수의 순환을 돋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별도로 환수주관에 순환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.

3.2 배관재료

송수주관 및 환수주관은 KSD 3507(배관용 탄소강관)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, 급탕용관은 KSD 3507중 백관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3.3 배관의 크기

송수주관 및 환수주관은 호칭 32A 이상을, 급탕용관은 호칭 15A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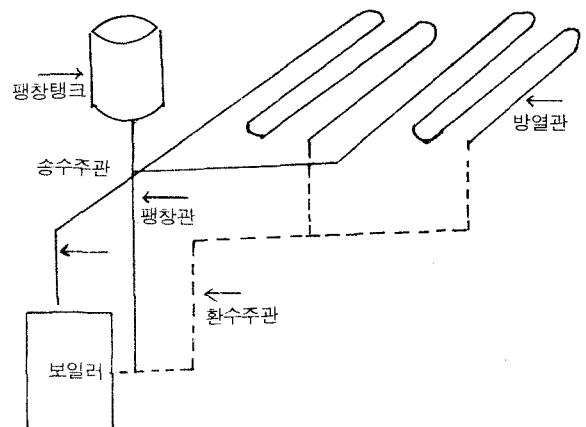
3.4 배관의 설치

배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

- (1) KSF 2803(보온·보냉공사시공표준)에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보온을 할 것.
- (2) 배관내의 온수와 보일러내의 물을 쉽게 배 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

3.5 팽창관 및 방출밸브

보일러 내의 물의 팽창에 대비하여 보일러에 인접한 주관선 또는 보일러의 최상부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팽창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 향순환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일러의 최상부 또는 송수주관의 최상부에 방출관 또는 방출밸



〈참고도 1〉 상향순환식의 예

3.6 팽창탱크

팽창관의 상부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(1) 물이 넘쳐흐를 경우를 위해 요인이 없도록 설치할 것
- (2) 상부에 적정크기의 통기구멍이 있을 것
- (3) 난방면적 10m²당 2l 이상(10m² 이하인 경우 2l 이상, 10m² 추가마다 2l 가산)의 크기 일 것
- (4) 원칙적으로 자동급수가 가능할 것
- (5) 어느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
- (6) 100°C의 온수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수위를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
- (7) 팽창관의 끝부분은 팽창탱크 바닥면보다 25 mm 높게 설치할 것

3.7 온수탱크

급탕이 필요하여 온수탱크를 설치할 경우에
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.

- (1) 내식성재료 또는 내식처리된 재료로 제작된
온수탱크일 것
- (2) KSF 2803(보온·보냉공사 시공표준)에 정
하는 방법에 따라 보온을 할 것
- (3) 100°C의 온수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
- (4) 물빼기관 또는 밸브가 있을 것
- (5) 밀폐식인 경우 팽창관등 팽창흡수장치가 있
을 것

3.8 공기방출기

배관중의 공기를 방출할 수 있는 공기방출기
가 있어야 한다.

4. 연도 및 굴뚝

연도 및 굴뚝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
다.

- (1) 연도는 급침부의 수를 3개소 이내로 하는 것
을 원칙으로 하며 수평부의 기울기는 1 / 10
이상으로 한다.
- (2) 연도는 방, 마루등의 밑을 통과해서는 안된
다.
- (3) 보일러의 배기가스 출구와 연도와의 연결부
또는 굴뚝의 최하부에 개자리를 설치하여
야 한다. 이때 개자리의 재료는 구멍탄용은
수보일러 형식승인 기준의 수질재료 및 두
께와 동등이상 또는 KSL 3208(도관)과 동
등이상의 품질을 갖춘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굴뚝은 보일러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 매
보일러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연도 및 굴뚝은 보일러 배기가스에 충분히
견딜 수 있어야 하며, 크기는 보일러 배기ガ
스 출구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

5. 설치 · 시공검사

5.1 수압 및 안전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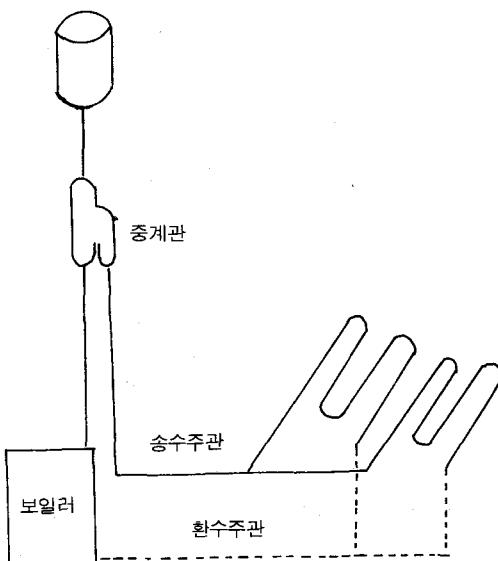
- (1) 보일러 설치가 끝난후 시험압력 $2\text{kg}/\text{cm}^2$ 의
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및 변형이 없어
야 한다.

- (2) 본 기준의 제2항 내지 제4항에 적합 여부를
확인한다.

5.2 보일러의 연소 및 배기성능 관계

- (1) 보일러 연소통에 물을 적신 종이류 등을 태
워 보일러, 연도 및 굴뚝등에서 연기가 새지
않아야 한다.
- (2) 보일러를 시험가동하여 연소상태, 연소조절
등이 원활하여야 한다.

팽창탱크



〈참고도 2〉 하향순환식의 예

5.3 보온상태

배관 및 온수탱크에 적절한 보온이 되었는가
확인한다.

6. 기타

본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시험기관,
국공립연구소 및 관련학회 등에서 별도로 우수
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아
니할 수 있다.